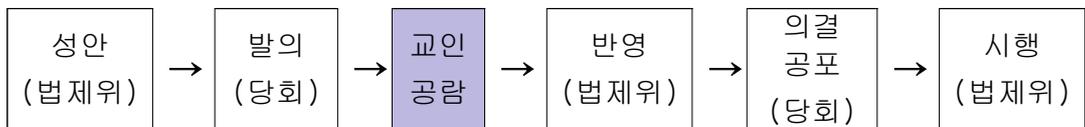
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	

**『교회학교운영및장학사업관리규칙』  
개정안**

대표 발의자 (공동)	당회원 교육위원장 기대석	(서명)
	당회원 법제위원장 박인초	(서명)
발의일	2016. 5. 29.	



# 당회 의결서

## 1. 의안

- 『교회학교운영및장학사업관리규칙』 개정안

## 2. 발의자 : 교육위원장 기대석 법제위원장 박인초

## 3. 경과

- 5.1 소위 1차 모임, 입법계획 검토
- 5.8 소위 2차 모임, 제정안 초안 검토
- 5.29 당회 발의
- 6.12~6.19 교인공람, 의견 반영
- 6.26 정기당회 의결, 공포시행(7일후)

## 4. 심의 · 의결내용

서부제일교회 교회조직 · 운영기본규정 제17조7의  
규정에 따라 同 의안을 심의 · 가결함.

## 5. 관련조치

동 규칙을 2016. . . 공포 · 시행함.

2016. .

당회장 :

(서명)

## 1. 의결주문

「교회학교운영및장학사업관리규칙」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그동안 장학금이 학교교육에 필요한 등록금에 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,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면이 존재

이에 등록금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종류의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방식 개선 요구가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함. (제30조 제2항 신설 및 제32조 개정)

## 3. 주요내용

<개정안 전문,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>

# 교회학교운영및장학사업관리규칙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칙은 서부제일교회에 두는 각급 교회학교의 설립과 운영, 교육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장학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교회에 각급 교회학교를 설립하며,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부제일교회 교회학교(이하 '교회학교'라 함)라 한다.

제3조(교육방향) 교회학교는 유아 및 청소년 교인들이 성경말씀을 배우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고,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조직

제4조(교육부서) 본 교회는 제3조의 교육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부서를 둔다.

1. 아기학교
2. 유아유치부
3. 유년부
4. 소년부
5. 중등부
6. 고등부
7. 청년부
8. 영어예배부
9. 기타

제5조(조직) 본 교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.

1. 교회학교 : 교장, 교육담당교역자
2. 교육협의회 : 교육위원장, 교육담당교역자, 지도교역자, 각 부장, 각 부 총무
3. 각부서 교사회 : 각부서 부장, 부감, 임원(총무, 서기, 회계) 및 교사
4. 각부서 자치회 : 회장, 임원, 회원

제6조(교회학교 각부의 조직) 교회학교 각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.

1. 지도교역자 : 당회가 임명하며, 소관부서 부장과 상의하여 소관부서의 예배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구·지도한다.
2. 부장 : 부서의 대표자로서 당회가 임명하며, 지도교역자의 예배 및 교육운영을 지원한다.
3. 부감 : 당회가 임명하며, 부장을 보좌하고 교사간의 인화단결 및 교사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부장과 지도교역자와 함께 협의한다.
4. 총무 : 소관부서의 교육행정을 담당 진행한다.
5. 서기 : 소관부서의 사무와 기록업무를 담당하고 모든 문서를 관리 보관한다.
6. 회계 : 소관부서의 재정과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7. 부장은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분과를 둘 수 있다.

## 제3장 학령 및 교과과정

제7조(학령) 각 교육부서의 학령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아기학교 : 18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, 평일에 운영한다.

2. 유아유치부 : 5세 미만의 어린이
3. 유년부 : 초등학교 1-3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
4. 소년부 : 초등학교 4-6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
5. 중등부 : 중학교 1-3 학년에 해당되는 청소년
6. 고등부 : 고등학교 1-3 학년에 해당되는 청소년
7. 청년부 : 고등부 수료 후 만 19세 전후의 청년
8. 영어예배부 : 2~4에 해당되는 어린이
9. 기타

#### 제8조(교과과정)

1. 각 부서의 교과과정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협의회에서 정한다.
2. 각 부서가 1의 교과과정 이외에 다른 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목사와 상의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교사

제9조(교사의 자격) 본 교회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교회에 등록된 후 1년 이상 된 자로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. 단, 신입교사는 1년 이상의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. 신입교사에는 타 교회 경력자를 포함한다.
2. 제15조 1~2의 교사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봉사하였거나 봉사 중인 교사는 제15조 1의 신입교사교육을 제외한다.
3. 각 부장은 지휘, 반주, 찬양, 율동, 연극 및 기타 필요로 하는 특별활동 분야에는 1에 관계없이 최대 5명의 수습교사를 선발·활용할 수 있다.
4. 수습교사로서의 근무기간은 정교사로 임명되는 경우 교사근속 연한에 포함된다.
5. 수습교사에 관한 모든 규칙은 정교사와 동일하다.

제10조(임명 및 임기) 각부 직제에 대한 임명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1. 부장 : 당회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, 동일 부서에 5년 이상 봉사하지 아니한다.
2. 임원 : 총무, 서기, 회계는 각부의 교사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동일 부서에서 동일 임원직을 2회 이상 봉사하지 아니한다.
3. 교사 : 해당 부장과 지도교역자가 추천하고 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당회가 임명하며, 봉사기간과 순환이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① 6년 이상 봉사한 교사는 타 부서로 순환 이동되며, 순환이동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없다.
  - ② 순환이동은 7조 1-2 내에서, 7조 3-4내에서, 7조 5-6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육협의회가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③ 순환 대상자가 해당부서에서 연장근무를 하기위해서는 매년 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사임) 교사가 사정에 의하여 교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부장과 지도교역자를 경유하여 교육협의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해임) 아래에 해당하는 교사는 해임한다.

1. 연간 무단결석 횟수가 10회 이상인 교사
2. 교회와 학생에게 부덕하거나 이단 및 사이비 교리를 가르치는 자
3. 근무상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각 부장이 해임을 건의한 교사(근무기록부의 평가 기준은 교육협의회가 별도로 정한다)

제13조(포상) 교사의 노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.

1. 개근교사상 : 1년간 개근한 교사에게 시상한다.
2. 모범교사상 : 5년간 교육과 활동에 있어서 모범인 교사로 각 부장이 추천하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한다.
3. 근속교사상 : 근속기간이 10, 20, 30년에 해당하는 교사에게 시상한다(근속년수에 관한 기준은 교육협의회가 별도로 정한다).

## 제5장 교사 교육과정

제14조(교육과정 주관) 교사 교육과정은 교육담당교역자 주관으로 본 교회 교역자를 주장사로 하고, 과목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. 교육내용과 방법은 교장 및 교육협의회와 협의하여 교육담당 교역자가 별도로 정한다.

제15조(교육과정) 교사는 다음의 교육과정을 필하여야 한다.

1. 신입교사 교육 : 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신입교사 및 교사 지원자는 필히 본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2. 교사대학 : 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교사(수습교사 포함)는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(교사대학은 교사부흥회로 대체할 수 있다).
3.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: 전교사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(단, 지도교역자의 지도아래 자체 강습회를 할 수 있다).
4. 교사 강습회 : 교육협의회가 교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주관하고 매년 11월에서 차년도 2월 사이에 실시하며 교사는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.
5. 교사총회 : 교육협의회가 주관하며 다음 연도 교육계획 및 규칙 개정 등을 실시하고 교사 부흥회와 함께 한다.

제16조(교육내용) 교육내용은 교육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

제17조(수료증) 교사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서부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장 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## 제6장 학생

제18조(학생시상) 각 부는 연말에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.

1. 개근상 : 연52회 주일예배에 출석한 학생
2. 정근상 : 연52회 주일예배 중 3회 이하로 결석한 학생
3. 전도상 : 전도실적이 우수한 학생
4. 모범상 : 신앙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
5. 기타 : 각 부서는 부서별 특별상을 제정 시상할 수 있다.

제19조(등반) 3주 이상 계속 출석한 학생은 4주째 등반한다.

제20조(입학) 제7조 학령규칙에 따라 학생의 학령에 맞게 교회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(단, 등반은 제21조에 의한다).

제21조(수료 및 진급) 각 과정의 2/3 이상을 수료한 학생은 1월 첫째 주에 상급부서로 진급한다(단, 신입생은 등반일로부터 2/3를 적용한다).

제22조(제적) 각 부장은 6개월 이상 연속 무단 결석한 학생을 지도교역자의 승인을 얻어 제적할 수 있다.

## 제7장 회의

제23조(각종 회의) 본 교는 교육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.

1. 교육협의회의 : 교육담당교역자, 지도교역자, 각부 부장 및 총무로 구성하며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2. 임원교사 실무세미나 : 각부 총무, 서기, 회계로 구성하며 연(年) 1회 모여 교육활동에 관한 실무사항을 검토한다.
3. 총무회의 : 각부서 총무로 구성하며 필요시 세부 업무를 토의한다.
4. 교사월례회의 : 각 부의 월간행사와 운영을 협의하기 위해 각 부장이 주관하며 월1회 실시한다(단, 각 부서의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).
5. 교사정기총회 : 각 부의 일년 행사를 협의하고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매년 12월 각 부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.

## 제8장 행정

제24조(행정일반) 각 부는 교육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다음의 각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표어, 조직, 활동계획, 예산, 주소 등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서를 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2. 외래강사를 초빙하고자 할 경우 교육담당교역자를 경유하여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3. 교육위원회는 산하 각 부의 행정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(年) 1회(6월) 행정감사를 실시한다.

제25조(문서) 각 부의 보관문서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위원회 : 교사 신앙생활기록부, 학생신앙생활기록부, 시설 및 물품대장, 도서대장, 졸업생명부, 시상대장, 예배일지, 기타 각종문서철, 회계장부, 교사출근부, 교사근속대장, 회의록, 교사근무기록부
2. 각부 : 예배일지, 학생출석부, 주보철, 교사회회의록, 비품대장, 시상기록부, 회계장부, 학생생일명부, 기타 각종문서철, 교사근무기록부

## 제9장 재정

제26조(재정수입) 각 부의 재정은 교회의 보조금과 자체 수입으로 한다.

제27조(재정규칙) 각 부의 재정규칙은 다음과 같다.

1. 세입예산 중 교육 보조금은 교회(재정위원회)가 정한다.
2. 예산집행의 기준은 교육위원회가 정한 계정과목에 따라야 한다.
3. 보조금은 각 부서 회계가 부장 및 교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정부에 청구·수령한다.
4. 재정보고는 정기 월례회 시 실시하여야 한다.
5. 회계감사는 연(年) 2회 이상 하되, 1회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며 1회 이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.

## 제10장 장학사업

제28조(장학사업의 방향) 교회의 장학사업은 기독교정신과 교육철학에 입각한 면학풍토 조성파 교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제29조(장학부)

1. 장학부는 부장 및 부원 6명으로 한다.
2. 위원은 고등부, 청년부 부장 기타 위원장의 제청으로 당회가 임명하는 제직회원으로 한다.

제30조(장학금 조성 및 지급)

1. 장학금은 다음의 항목으로 조성한다.

- ① 교회 예산
- ② 장학헌금
- ③ 후원금 등

2. 조성된 장학금은 다음 항목으로 집행한다.

- ① 학비 장학금
- ② 선교 장학금
- ③ 봉사 장학금

제31조(지급대상자 선정 원칙)

1.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(재학생에 한하며 당해 학년도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를 포함한다)으로서 ①~④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, 이외에 전체 장학생의 10~20% 범위 내에서 본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- ①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
- ② 교회 봉사자
- ③ 교회 발전에 공이 큰 자
- ④ 성적 우수자

2. 각 부서는 장학부를 경유하여 교육위원회에 장학 대상자를 추천하며, 교육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당회에 상정, 당회의 의결에 따라 장학생을 정한다.

제32조(장학생 선정 시기) 장학생은 장학위원회의 요청 또는 당회의 결의로 그 선정 시기를 정하여 선발한다.

제33조(구비서류) 장학생 심사서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별지 1호 서식 <장학생 추천서>
- 2. 등록금 고지서 사본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
- 3. 성적증명서

제34조(장학생추천) 장학부장은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추천받는다.

- 1. 고등부와 청년부의 추천
- 2.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장이 추천
- 3. 교구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각 구역장이 추천
- 4. 성적우수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

제35조(선정 및 지급) 장학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 및 지급을 결정한다.

- 1. 장학부장은 지급정원의 1.2배에 해당하는 추천서를 모아서 장학부내 협의를 거친 후 교육위원회에 상신한다.
- 2. 교육위원장은 1에 의해 상신된 후보자 중 최종 수혜자를 정하여 당회의 의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3. 장학금 수급자는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금영수증 사본을 장학부에 제출한다.

제36조(이중 수급 방지) 본 규칙에 의한 각종 장학금은 대내외를 포함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.

제37조(자격제한)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. 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리를 받고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2. 휴학 또는 제적자

3.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
제38조(환수) 장학금을 받은 자의 선정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,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  
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.

부칙(제정 2010. 1.31 서부제일교회규칙 제6호)

1. 본 규칙은 2010. 3. 1 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1호 서식)

## 장학생 추천서

### □ 장학 대상자와 가족

#### 1. 학생

- 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○ 출생년도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○ 성 :
- 주소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○ 학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○ 연락처 :
- 학교성적추정 : (최우수, 우수, 보통, 미흡, 아주미흡, 알수없음)
- 신앙생활(우리교회 출석여부, 교회출석시기, 세례입교관계, 교회학교 소속부서 및 출석여부, 교회학교내 역할, 특이 신상 등) :
  
- 우리교회 장학금 지급기록 :
- 학교 등 다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인지 파악내용 :

#### 2. 보호자(부, 모, 조부, 조모 중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분을 기록)

- 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○ 연령(추정)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○ 학생과의 관계 : (학생)의
- 주소 :
- 연락처 :
- 기타 가족 :

### □ 추천인

- 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○ 직분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○ 맡은일 :
- 연락처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○ 학생과의 관계 :
- 추천사유(상세히) :

위 학생을 서부제일교회 장학 대상자로 추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추천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)

서부제일교회 교육위원장 귀하